

(붙임 2)

**「한국은행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신구조문대비표**

현행	개정	비고
제1조 ~ 제4조( 생략 )	제1조 ~ 제4조( 현행과 같음 )	
<p><b>제5조(전략지원부문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목포본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목포본부의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. 다만, 제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는 금융기관 대출취급기준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<b>2021년 12월 31일까지</b>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②~⑦( 생략 )</p>	<p><b>제5조(전략지원부문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목포본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목포본부의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. 다만, 제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는 금융기관 대출취급기준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<b>2022년 6월 30일까지</b>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②~⑦( 현행과 같음 )</p>	<p>- 전략지원부문 조정(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 관련기업을 일반지원부문으로 분류)을 6개월 연장</p>
제6조 ~ 14조( 생략 )	제6조 ~ 14조( 현행과 같음 )	
<u>〈 신 설 〉</u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 &lt;2021. 12. .&gt;</u></p> <p><u>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  <u>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</u></p>	<p>- 부칙 신설</p> <p>- 시행일 명시</p> <p>- 경과조치 마련</p>